

국제공인시험기관 업무재개

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(시험·검사기관 인정)와 「공인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」 제29조(인정취소 등) 규정에 의거 인정정지 하였던 국제공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인정재개를 공고합니다.

2012년 6월 1일

한 국 인 정 기 구 장

인정번호	기관명	대표자	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법인소재지 (사업장소재지)	유효기간	업무재개 분야
KT371	(주)휴먼패스	이승재	135111-0054084 (123-81-61099)	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97-7번지 에이스테크노타워2 608호 (동일)	2008년 9월 4일 ~ 2012년 9월 3일	10. 법과학시험 10.004 DNA 검사

부칙 :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. 끝.